

2026년 제1회 경기교통공사 직원 채용 공고

경기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경기교통공사 사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총 9명

[공통사항]

- 모든 분야는 소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기획 및 실행, 법적·행정·재무적 검토 등의 일반 사무역량을 필요로 함
- 채용 후, 내부여건에 따라 이동 배치될 수 있음

구분	직급	분야	담당업무	구분	인원
총 계					9
공개경쟁	기간제근로자	행정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 등	일반	1
		교통사업 정산-A	· 교통사업 정산 및 운영 지원 ·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 등	일반	3
		교통사업 정산-B	· 용인시 준공영제 정산 및 운영 지원 · 정산 시스템 운영 관리 지원 ·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 등	일반	2
	청년인턴	행정	· 일반행정 및 교통사업 보조	일반	2
제한경쟁	장애인 청년인턴	행정	· 일반행정 및 교통사업 보조	장애인	1

나. 채용형태: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

다. 응시방법: 이메일 접수(recruit@gtrans.or.kr)

라. 채용시기: 2026년 7월 중 예정

마. 근무조건

- (1)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2) 근무지: 경기교통공사(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옥정동로7다길 74)
- (3) 근무기간: 분야별 상이

직급	분야	근무기간	비고
기간제근로자	행정	· 2026. 7. 1.(수) ~ 2026. 12. 31.(목)	
	교통사업정산-A	· 2026. 7. 1.(수) ~ 2026. 12. 31.(목)	
	교통사업정산-B	· 2026. 7. 1.(수) ~ 2027. 6. 30.(수)	
청년인턴	행정	· 2026. 7. 1.(수) ~ 2026. 12. 31.(목)	
장애인 청년인턴	행정	· 2026. 7. 1.(수) ~ 2026. 12. 31.(목)	

※ 기간제근로자에 한하여 공사 상황에 따라 평가 후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년을 초과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임용일 조정 시 근무종료일도 함께 조정될 수 있음

- (4) 급여수준: 분야별 상이

직급	분야	급여수준	비고
기간제근로자	행정	· 기본급 월 2,447,380원 ~ 2,533,050원	
	교통사업정산-A	· 기본급 월 3,046,690원 ~ 3,427,570원	
	교통사업정산-B		
청년인턴	행정	· 기본급 월 2,623,370원	
장애인 청년인턴	행정	· 기본급 월 2,623,370원	

※ 보수를 산정하는 경력은 입사지원 시 입사지원서 내 경험/경력사항에 명시한 경력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명시한 경력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로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경력에 한하여, 채용분야의 직무 관련성에 따라 산정됨

※ 가족수당, 자격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제수당 별도

- (5) 복리후생

- 선택적 복지포인트, 상조 서비스, 건강검진 등

2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바탕 정성평가 실시

직급	분야	평가항목
전 직급	전 분야	경력사항(30), 경력/경험기술서(30), 자기소개서(40)

○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 5배수 선발

- ※ 불합격 기준: 서류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자
- ※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차 시험의 합격자 대상 인성 및 역량 평가

시험시간	평가항목
그룹면접(다대다) 1인당 10분 내외 ※ 응시인원 등을 감안하여, 다대일로 변경될 수 있음	역량평가(100점 만점) [문제해결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역량(30), 직무이해(30)] 인성평가(100점 만점) [지원동기의 적절성(30), 공공기관 직원의 자질(30), 고객지향성(20), 자세·태도(20)]

○ 면접 심사위원의 역량인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 60점(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자
- ※ 단, 면접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40점 미만일 경우 가산점 미부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추가 합격의 예비 순위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정하여 최종 결정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채용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기교통공사 인사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경기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신체검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22.12.05>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22.12.05>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응시연령

직급	자격기준
기간제근로자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청년인턴	·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범위)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응시연령을 군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장
장애인 청년인턴	· 임용예정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 범위)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채용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직급	분야	구분	자격요건
기간제근로자	행정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교통사업 정산-A, B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청년인턴	행정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장애인 청년인턴	행정	장애인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채용공고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임용 예정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예정)

※ 위 자격기준의 적격성을 판단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4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적용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종에 한해 적용
사회 적 약 자	의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장애인	시험(과목)별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시험(과목)별 만점의 3%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3%	
자격(면허) 소지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10%	

나. 취업지원대상자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사회적약자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과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2) 단, 사회적약자의 경우 서류전형에만 가산점 적용

라. 자격(면허)소지자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해 각 과목 과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2) 단, 자격(면허)소지자의 경우 서류전형에만 가산점 적용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모집공고	'26. 4. 30.(목)
	응시원서 원서접수	'26. 5. 4.(월) ~ 5. 11.(월)
서류전형	서류전형	'26. 5. 19.(화) ~ 5. 20(수)
	합격자발표	'26. 5. 27.(수)
면접시험	면접시험	'26. 6. 4.(목) ~ 6. 5.(금)
	합격자발표	'26. 6. 12.(금)
최종합격자 임용등록		'26. 6. 15.(월) ~ 6. 18.(목)
결격사유 조회		'26. 6. 19.(금) ~ 6. 30.(화)
임용예정일		'26. 7. 1.(수)

※ 상기 일정은 시험 운영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별 별도 공지 예정

※ 임용예정일은 신원조회, 전력조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일정 및 결과 등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6 원서접수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recruit@gtrans.or.kr)

※ 이메일을 통해 접수 완료 여부 및 응시번호를 회신하니, 원서를 접수한 이메일 확인 필수

(2) 접수기간 : 2026. 5. 4.(월) ~ 5. 11.(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3) 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7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 접수 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2) 제출서류

<공통제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경력 및 경험기술서 1부.

<해당자 제출>

- 장애인 청년인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 등(장애인 증명서 등)
- 가산점 대상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의상자: 의상자 증서 등 1부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족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1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1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1부
 - 자격(면허)소지자: 증명서 1부

※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등)은 반드시 삭제 후 제출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1)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출신학교 등)의 작성을 제한함
- (2) 제출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권고
- (3)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의 인적사항(생년월일, 성별 등)은 반드시 삭제 후 제출
- (4)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1부 제출

- (5) 모든 증빙서류는 본인 입증 책임이 원칙이며, 확인이 불확실한 사항은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함
- (6) 최종 합격 시 임용등록서류를 임용등록 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 경험, 자격, 교육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 경력기간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포함
- 신원진술서(약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임용예정자용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1부.
-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1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결격사유 부존재서약서 1부.
- 통장사본 및 증명사진 각 1부.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자는 공고문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라. 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마.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합격한 후에라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서류 등록 시 자격검증 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접수내용과 다를 경우(허위사실 기재, 자격기준 미달)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바.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사. 우리 공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응시자 중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자. 채용 관련 비리·부정행위 및 소명 등을 위한 채용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합니다.
- ※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 ※ 접수방법: 이메일(recruit@gtrans.or.kr)
 - ※ 처리 예외사유
-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사항
 -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③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이메일: recruit@gtrans.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파.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 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 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거.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recruit@gtrans.or.kr, 031-860-15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30.

경기교통공사 사장